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021

발의연월일: 2024. 12. 27.

발 의 자:문대림・김 윤・문금주

강득구 • 이병진 • 이원택

유준병 • 박용갑 • 주철현

김정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은 우리나라 최외곽에 위치하여 국경수비대의 역할을 하는 국 토외곽 먼섬의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과 소득증대 및 생활기반시설의 정비·확충 등 지속가능한 섬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면 서,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을 위한 내용이 빠져 있어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 비해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종합발전계획의 원활한 시행과 주민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종합발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자에게 관련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20029호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0조의2(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합발전계획의 원활한 시행과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련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외곽 먼섬 주민에 대하여 조세감면 등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합발전계획에 반영된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종합발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
 ・사용료
 -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 4.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5.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유수·토지의 점용료 및 토석·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 6. 「초지법」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법률 제20029호 울릉도ㆍ흑산도 법률 제20029호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신 설> 제10조의2(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 체는 종합발전계획의 원활한 시행과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 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 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련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 외곽 먼섬 주민에 대하여 조세 감면 등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 합발전계획에 반영된 개발사업 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는 종합발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 자에게 다음 각 호의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 률 | 에 따른 개발부담금

-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 <u>부담금</u>
- 4.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 산림자원조성비
- 5.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유수·토지의 점용료 및 토석· 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 6. 「초지법」에 따른 대체초지 조성비